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 상품요약서

[제작일자: 2025.04.01]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 상품의 특이사항

Q1: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입니까?

A1: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은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연금 보험으로 연금개시전에는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을 보장하며 연금개시후에는 생존연금 을 보장하는 무사망 연금보험"입니다. 사망보장이 없는 연금보험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연금보험 대비 더 높은 환급률 및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질병이 있는 사람도 무진단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은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고객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도모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부가기능이 있습니다.

■ 복수연금선택제도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행복설계자금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설계자금(연금지급개시시점 적립액의 0% ~ 50%) 중 거치적립 미선택시와 거치적립 선택시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거치적립 미선택한 행복설계자금은 연금지급개시일에 적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되며, 거치적립 선택한 행복설계자금은 거치적립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조기연금전환옵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아래 조기연금전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가 원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을 개시하는 옵션입니다. 조기연금전환옵션 신청 후에는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취소할 수 있습니다.

- 조기연금전환 조건
 - 1.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
 - 2. 신청일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이상인 계약
 - 3. 조기연금개시시점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 ~ 85세[다만, 종신연금형(부부형)의 남자는 48세 ~ 85세, 종신연금형(내리사랑형)의 종피보험자는 만15세 이상1일 경우
 - 4.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 유지보너스

- 1. 회사는 연금개시 이전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유지보너스를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합니다.
- 2. 유지보너스 = 유지보너스 기준금액 x 유지보너스 발생률
 - 가. 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일시납 기본보험료

나. 유지보너스 발생률

유지보너스	유지보너스 발생률		
발생일	연금강화형 기본형		
계약일로부터 5년	2.00/	없 음	
경과시점 연계약해당일	2.9%	· · · · · · · · · · · · · · · · · · ·	

- 다.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을 계산합니다.
- 라.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도인출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특약보험료 제외)'와 '사망당시의 계약 자적립액(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 관한 사항

- (1)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원' 미만일 경우, 연금지 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원'으로 합니다.
- (2) (1)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을 말한다.

Q2: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의 추가납입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A2 :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일시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며, 1구좌를 한도로 하여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로 하여「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 전 보

험기간」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 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계약자가 행복설계자금 거치적립을 선택한 경우 행복설계자금 거치적립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총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 배 이내로 한다.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액을 포함하며, 1 회 추가납입 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 □ 1 회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일시납 기본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중도인출금의 합계액

Q3: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의 중도인출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3:

■ 적립액의 중도인출

- 1.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주계약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의 70%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장래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최소 계약자적립액(최저보증이율 적용)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후 10년 이내의 총 인출가능금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인출 시점까지의 총납입보험료」이하로 합니다.
- 3.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 행복설계자금의 중도인출

- 1. 보험수익자는 행복설계자금의 거치적립 보험기간 중 행복설계자금(보험계약대출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의 70% 범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행복설계자금을 인출(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할 수 있습니다.
- 2. 행복설계자금의 인출금액은 인출 후 행복설계자금이 연금지급개시시 행복설계자금 의 20%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행복설계자금 거치적립 보 험기간 중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은 행복설계자금에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 3. 중도인출은 행복설계자금 거치적립 보험기간 중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 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 에 한하여 행복설계자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Q4: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A4: 계약할 때에는 종신연금형만 가입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종신연금 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자유연금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신연금형(부부형, 내리사랑형)에 한하여 연금지급개시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를 피보

험자로 하는 종신연금형(개인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신연금형(개인형)과 종신연금형(부부형, 내리사랑형)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정산하고 전환 시점 부터의 연금액은 종신연금형(개인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자격요건

- ① 보험종류
 -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
 - · 종신연금형
 - 기간보증형(10, 15, 20, 25, 30년, 기대여명 보증지급)
 - : 개인형, 부부형 [정액형, 체증형(5%, 10%)]
 - 기간보증형(10, 15, 20, 25, 30년 보증지급): 내리사랑형 [정액형, 체증형(5%, 10%)]
 - 100세보증형: 개인형, 부부형, 내리사랑형 [정액형, 체증형(5%, 10%)]
 - 조기집중형(10, 20, 30년 보증지급): 2, 3, 4, 5배형
 - · 확정연금형 (5, 10, 15, 20, 25, 30년 확정) [정액형, 체증형(5%, 10%)]
 - . 상속연금형
 - ㆍ 자유연금형
- ②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다만, 확정연금형 및 자유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③ 보험료 납입기간(m): 일시납
- ④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개시나이(A)
 - 가입나이: 0세 ~ (A-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A): 45세 ~ 85세(다만, 부부형의 남자는 48세~85세로 함)
- ⑤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 ⑥ 가입한도
 - 주계약: 한도없음
- ⑦ 건강진단여부
 - 무진단

2. 보험금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

- + 무배당동양연금전환특약_LTC 연금전환형(제도성)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제도성)
- + 특별조건부특약(제도성)
-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제도성)

◈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구좌 기준]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고도재해장해 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주)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특약보험료 제외)'와 '사망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 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9	년금지급형태 -		지 급 금 액			
	기간 보증형 (개인형)	·	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자적립액 기준으로「연금사망률」및「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는 기대여명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기간 보증형 (부부형, 내리사랑형)	주피 보험자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연금사망률」및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10 년, 15 년, 20 년, 25 년, 30 년 또는 기대여명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종피 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10 년, 15 년, 20 년, 25 년, 30 년 또는 기대여명 보증지급)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주피보험자 연금액의 100%를 지급			
종 긴 연 대 평	100세 보증형 (개인형)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연금사망률」및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리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100세 보증형 (부부형, 내리사랑형)	주피 보험자 종피 보험자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100 세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주피보험자가 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100 세 보증지급) 이후에			
	조기 집중형 (2, 3, 4, 5 배형)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연금사망률」및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 조기집중지급기간 동안의 생존연금이 조기집중지급기간 이후 생존연금의 2 배(또는 3 배, 4 배, 5 배)가 지급되도록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 년, 20 년 또는 30 년 보증지급)				

- 1. "계약자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계약자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합니다.
- 2.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 원" 미만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 원"으로 합니다.
- 3. "2"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 4.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받는 생존연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체증형의 연금액은 10 차년도까지 년단위로 체증하며 10 차년도 이전 연금액은 전년 도 연금액의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말하며, 11 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10 차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7. 생존연금을 매월, 3 개월, 6 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 개월, 6 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8.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당시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9. 종신연금형(부부형) 및 종신연금형(내리사랑형)의 100 세 보증형은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10. 종신연금형 중 조기집중형 선택시 계약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로 조기집중지급기 간(5년~30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11.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 또는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생존연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12. 종신연금형 중 기간보증형(기대여명 보증지급)은 개인형 또는 부부형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계산합니다.
- 13. 생존연금액은 "생존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행복설계자금 및 연금

■ 계약자는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의 변경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 할 수 있습니다.

1) 행복설계자금

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설계자금(연금지급개시일 계약자적립액의 0%~50%)을 다음과 같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거치적립 미선택시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때	거치적립 미선택한 행복설계자금을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	
행복 설계 자금	거치적립 선택시	피보험자가 거치적립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거치적립 선택한 행복설계자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행복설계자금을 지급)	

㈜

- 1. 계약자는 선택한 행복설계자금(연금지급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의 0%~50%) 중 거 지적립 미선택시와 거치적립 선택시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자는 거치적립 선택시 행복설계자금의 거치적립 보험기간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과 [100 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중 작은 기간 이내의 연계약해당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거치적립 선택시 거치적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행복설계자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4. 거치적립 선택시 해당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2) 생존연금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u>6</u>	년금지급형태 -		지 급 금 액		
총 신 연 급 형	기간 보증형 (개인형)	['] '	지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 - 행복설계자금' 기준으로「연금사망률」및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는 기대여명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총 긴 연 대 평	기간 보증형 (부부형, 내리사랑형)	주피 보험자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 - 행복설계자금' 기준으로 「연금사망률」및「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는 기대여명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연금지급형태		지 급 금 액
	종피 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는 기대여명 보증지급)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주피보험자 연금액의 100%를 지급
100세 보증형 (개인형)	′ 7:	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예약자적립액 - 행복설계자금'기준으로「연금사망률」및 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100세 보증형 (부부형, 내리사랑형)	주피 보험자 종피 보험자	지급(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주피보험자가 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100세 보증지급) 이후에
조기 집중형 (2,3,4,5 배형)	'가 「공시 조기	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예약자적립액 - 행복설계자금'기준으로「연금사망률」및 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기집중지급기간 당인의 생존연금이 조기집중지급기간 이후금의 2배(또는 3배, 4배, 5배)가 지급되도록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년, 20년 또는 30년 보증지급)
확 정 연금형	행복설	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 - 계자금' 기준으로「공시이율」및 확정연금 지급기간(5, 10, 15, 또는 30년)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확정연금을 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상 속 연금형	'계약	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자적립액 - 행복설계자금'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다만,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연금지급형태	지 급 금 액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 -
자 유	행복설계자금'에서 회사가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연금형	선택한 금액을 자유연금으로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 1. "계약자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 또는 행복설계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계약자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 또는 행복설계자금을 차감합니다.
- 2.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 원" 미만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 원"으로 합니다.
- 3. "2"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 4.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받는 생존연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2 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계산된 생존연금액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하여 드립니다.
- 6. 체증형의 연금액은 10 차년도까지 년단위로 체증하며 10 차년도 이전 연금액은 전년 도 연금액의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말하며, 11 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10 차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7.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 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8.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지급 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상속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계약은 소멸됩니다.
- 10. 자유연금형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매년 연금지급개시일 이전에 매년 지급되는 연금 연액을 정합니다. 연금지급개시시점에 보험계약자가 연금연액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의 20%, 그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연금연액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연금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여 드리며, 생존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의 연금연액의 결정은 연금을 받는 자(연금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11. 자유연금형의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연액의 지급한도는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행복설계자금'」의 20%를 최대금액으로 하고, 100 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100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잔액을 연금연액으로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 12. 자유연금형의 경우「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행복설계자금'」이 500 만원 이상이 되어야 선택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 이전에 자유연금형을 선택하고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액-행복설계자금'」이 500 만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다른 연금지급형태로 전환하여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13. 연금을 매월, 3 개월, 6 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 개월, 6 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1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당시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당시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15. 종신연금형(부부형) 및 종신연금형(내리사랑형)의 100 세 보증형은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16. 종신연금형 중 조기집중형 선택시 계약자는 보증지급기간이내로 조기집중지급기간 (5 년~30 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17.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 또는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생존연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18. 종신연금형 중 기간보증형(기대여명 보증지급)은 개인형 또는 부부형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계산합니다.
- 19. 생존연금액은 "생존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해약환급금 지급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해약환급금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해약환급금 지급
 -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2 년이 내): 해약환급금 지급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 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 을 안 날로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 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사항 지급제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1 년)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적립이율

①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② 적립부분 적용이율(적립이율)

Q: 적립부분 적용이율(적립이율)은 무엇인가요?

A1 : 적립부분 적용이율(적립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이 상품의 적립부분에 적용되는 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확정이율, 5년 초과에서는 공시이율이 적용됩니다. 확정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3.90%입니다.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5년 4월 현재 공시이율은 연복리 2.50%이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최저보증이율

Q: 최저보증이율은 무엇인가요?

A: 최저보증이율이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회사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립부분 적용이율의 최저한도입니다.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0.5%입니다.

④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 는 내려갑니다.

구년	20 세	40 세	60 세	
재해장해	남자	0.000017	0.000014	0.000074
80%이상발생률	여자	0.000006	0.000004	0.000022

구능	50 세	60 세	70 세	
개인연금생존사망률	남자 40세 가입기준	0.001016	0.001755	0.003490
	여자 40세 가입기준	0.000505	0.000611	0.001166

⑤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입니까?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4.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Q: 계약자배당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 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며, 또 그종류에는 총괄배당과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은 무배당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우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하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 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기본형, 남자 55세, 65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단위: 만원] ① 최저보증이율 가정

경과기간	납입	해약	환급률	계약자	적립률
6피기선	보험료(A)	환급금(B)	(B/A)	적립액(C)	(C/A)
3 개월	5,000	4,929	98.59%	4,929	98.59%
6 개월	5,000	4,961	99.22%	4,961	99.22%
9 개월	5,000	4,992	99.84%	4,992	99.84%
1 년	5,000	5,022	100.45%	5,022	100.45%
2 년	5,000	5,151	103.03%	5,151	103.03%
3 년	5,000	5,340	106.81%	5,340	106.81%
4 년	5,000	5,536	110.73%	5,536	110.73%
5 년	5,000	5,740	114.80%	5,740	114.80%
6 년	5,000	5,785	115.70%	5,785	115.70%
7 년	5,000	5,831	116.62%	5,831	116.62%
8 년	5,000	5,877	117.54%	5,877	117.54%
9 년	5,000	5,923	118.47%	5,923	118.47%

경과기간	납입	해약	환급률	계약자	적립률
	보험료(A)	환급금(B)	(B/A)	적립액(C)	(C/A)
10 년	5,000	5,971	119.42%	5,971	119.42%

② 평균공시이율(2.75%)과 공시이율(2.50%) 중 낮은 이율 가정

경과기간	납입	해약	환급률	계약자	적립률
경 파 기신	보험료(A)	환급금(B)	(B/A)	적립액(C)	(C/A)
3 개월	5,000	4,929	98.59%	4,929	98.59%
6 개월	5,000	4,961	99.22%	4,961	99.22%
9 개월	5,000	4,992	99.84%	4,992	99.84%
1 년	5,000	5,022	100.45%	5,022	100.45%
2 년	5,000	5,151	103.03%	5,151	103.03%
3 년	5,000	5,340	106.81%	5,340	106.81%
4 년	5,000	5,536	110.73%	5,536	110.73%
5 년	5,000	5,740	114.80%	5,740	114.80%
6 년	5,000	5,871	117.42%	5,871	117.42%
7 년	5,000	6,005	120.11%	6,005	120.11%
8 년	5,000	6,143	122.87%	6,143	122.87%
9 년	5,000	6,285	125.70%	6,285	125.70%
10 년	5,000	6,430	128.60%	6,430	128.60%

③ 공시이율(2.50%) 가정

7777	납입	해약	환급률	계약자	적립률
성과기간 	경과기간 보험료(A) 환급금(B)		(B/A)	적립액(C)	(C/A)
3 개월	5,000	4,929	98.59%	4,929	98.59%
6 개월	5,000	4,961	99.22%	4,961	99.22%
9 개월	5,000	4,992	99.84%	4,992	99.84%
1 년	5,000	5,022	100.45%	5,022	100.45%
2 년	5,000	5,151	103.03%	5,151	103.03%
3 년	5,000	5,340	106.81%	5,340	106.81%
4 년	5,000	5,536	110.73%	5,536	110.73%
5 년	5,000	5,740	114.80%	5,740	114.80%
6 년	5,000	5,871	117.42%	5,871	117.42%
7 년	5,000	6,005	120.11%	6,005	120.11%
8 년	5,000	6,143	122.87%	6,143	122.87%
9 년	5,000	6,285	125.70%	6,285	125.70%
10 년	5,000	6,430	128.60%	6,430	128.60%

[기준: 연금강화형, 남자 55세, 65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단위: 만원] ① 최저보증이율 가정

경과기간	납입	해약	환급률	계약자	적립률
0-1712	보험료(A)	환급금(B)	(B/A)	적립액(C)	(C/A)
3 개월	5,000	4,859	97.19%	4,859	97.19%
6 개월	5,000	4,888	97.77%	4,888	97.77%
9 개월	5,000	4,917	98.34%	4,917	98.34%
1 년	5,000	4,945	98.91%	4,945	98.91%
2 년	5,000	5,065	101.30%	5,065	101.30%
3 년	5,000	5,250	105.00%	5,250	105.00%
4 년	5,000	5,442	108.85%	5,442	108.85%
5 년	5,000	5,787	115.75%	5,787	115.75%
6 년	5,000	5,833	116.67%	5,833	116.67%
7 년	5,000	5,879	117.59%	5,879	117.59%
8 년	5,000	5,926	118.52%	5,926	118.52%
9 년	5,000	5,973	119.47%	5,973	119.47%
10 년	5,000	6,021	120.42%	6,021	120.42%

② 평균공시이율(2.75%)과 공시이율(2.50%) 중 낮은 이율 가정

경과기간	납입	해약	환급률	계약자	적립률
8세기년	보험료(A)	환급금(B)	(B/A)	적립액(C)	(C/A)
3 개월	5,000	4,859	97.19%	4,859	97.19%
6 개월	5,000	4,888	97.77%	4,888	97.77%
9 개월	5,000	4,917	98.34%	4,917	98.34%
1 년	5,000	4,945	98.91%	4,945	98.91%
2 년	5,000	5,065	101.30%	5,065	101.30%
3 년	5,000	5,250	105.00%	5,250	105.00%
4 년	5,000	5,442	108.85%	5,442	108.85%
5 년	5,000	5,787	115.75%	5,787	115.75%
6 년	5,000	5,920	118.40%	5,920	118.40%
7 년	5,000	6,056	121.12%	6,056	121.12%
8 년	5,000	6,195	123.90%	6,195	123.90%
9 년	5,000	6,337	126.75%	6,337	126.75%
10 년	5,000	6,484	129.68%	6,484	129.68%

결과기가	경과기간 나입		환급률	계약자	적립률
8취기년	보험료(A)	환급금(B)	(B/A)	적립액(C)	(C/A)
3 개월	5,000	4,859	97.19%	4,859	97.19%
6 개월	5,000	4,888	97.77%	4,888	97.77%
9 개월	5,000	4,917	98.34%	4,917	98.34%
1 년	5,000	4,945	98.91%	4,945	98.91%
2 년	5,000	5,065	101.30%	5,065	101.30%
3 년	5,000	5,250	105.00%	5,250	105.00%
4 년	5,000	5,442	108.85%	5,442	108.85%
5 년	5,000	5,787	115.75%	5,787	115.75%
6 년	5,000	5,920	118.40%	5,920	118.40%
7 년	5,000	6,056	121.12%	6,056	121.12%
8 년	5,000	6,195	123.90%	6,195	123.90%
9 년	5,000	6,337	126.75%	6,337	126.75%
10 년	5,000	6,484	129.68%	6,484	129.68%

주)

- 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2.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평균공시이율(2.75%)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및 공시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다만, 가입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적립이율]의 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3. 평균공시이율이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은 2.75%입니다.
- 4. 실제 해약환급금은 5년 초과기간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5.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0.5%입니다.
- 6.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7. 상기 예시된 금액은 연계약해당일 전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에 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해당년도의 유지보너스(계약해당일 기준)를 더한 금액이며, 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6. 모집수수료율

모집수수료란?

모집수수료란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기준 : 연금액강화형, 일시납, 기본보험료 1억원]

구 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율	0.51% ^{주 1)}	0.16% ^{주 1)}	0.00% ^{주 1)}	0.00% ^{주 1)}	0.67% ^{주 2)}

- 주 1) 1 년~4 년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 주 2)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 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음.

7.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가) 기본형

[기준: 기본형, 남자 55세, 65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1 차월	2 차월~24 차월	25 차월 이후
2.137%	0.109%	0.020%

※ 상기비율은 경과기간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합산비율입니다.

[기준: 기본형, 남자 55세, 65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1] [1] [1] [1] [1] [1] [1] [1] [1] [1]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2 년이내: 기본보험료의 0.089%(44,500 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 차월: 기본보험료의 2.048%(1,024,000 원)		
보험관계비용	게탁한다미중	매별	납입기간이후: 기본보험료의 0.020%(10,000 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066%~0.000124%		
	기감포감표	메걸	(33~62 원)		
	연금수령기간중의	연금	종신연금형 : 연금연액의 0.8%		
연금수령기간	관리비용	수령시	그 외 : 연금연액의 0.5%		
중 비용	행복설계자금	미비오티	행복설계자금지급시까지		
	신청시 관리비용	매월	행복설계자금재원의 0.005%		
케야고피	해지에 따른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해약공제	페널티	에시시	이네 포표 삼조		

※ 해약공제 비용

경과시점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7 년이상
해약공제액(만원)	0	0	0	0	0	0	0	0
해약공제비율	0%	0%	0%	0%	0%	0%	0%	0%

주) 해약공제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이며, 해약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공제액 비율임

나) 연금강화형

[기준: 연금강화형, 남자 55세, 65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1 차월	2 차월~24 차월	25 차월 이후
3.500%	0.120%	0.020%

※ 상기비율은 경과기간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합산비율입니다.

[기준: 연금강화형, 남자 55세, 65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구 분	목 적	시 기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2 년이내: 기본보험료의 0.100%(50,000 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 차월: 기본보험료의 3.400%(1,700,000 원)
보험관계비용	게크린디미증	메걸	납입기간이후: 기본보험료의 0.020%(10,000 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066%~0.000124%
	기감보감표	引担	(33~62 원)
	연금수령기간중의	연금	종신연금형 : 연금연액의 0.8%
연금수령기간	관리비용	수령시	그 외 : 연금연액의 0.5%
중 비용	행복설계자금	메의	행복설계자금지급시까지
	신청시 관리비용	매월	행복설계자금재원의 0.0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페널티	-11. 11. 1	1-11

※ 해약공제 비용

경과시점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7 년이상
해약공제액(만원)	0	0	0	0	0	0	0	0
해약공제비율	0%	0%	0%	0%	0%	0%	0%	0%

주) 해약공제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이며, 해약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공제액 비율임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없음

주) 중도인출금액 부분에 대한 추가납입일 경우: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은 부가하지 않고,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최대 3 만원까지 부가함